

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환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8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  
발 의 자 : 이종환, 경만선, 김춘례,  
노승재, 오한아, 최영주  
의원(6명)  
찬 성 자 : 김기대, 김기덕, 봉양순,  
이성배 의원(4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은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,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(2021.05.18.)됨.
- 이에, 개정된 법률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원활한 체육시설 이용을 모도하고,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“일반이용자”, “공중보건 위기상황”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(안 제2조 제14호, 제15호 신설).
- 나. 체육시설 특성에 따라 방역 및 필요한 예방조치를 추가함(안 제4조).
- 다.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추가함(안 제18조제2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생활체육진흥법」,  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“일반이용자”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.

15. “공중보건 위기상황”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(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등으로 국민의 생명·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.

제4조 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라 한다)은”을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”으로 하고 “보호·육성해야하며, 체육인의 인권보호와”를 “보호·육성하여야 하며,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방역 및 필요한 예방조치가 개별 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이외에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         <p>제4조(책무)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"<u>시장</u>"라 한다)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·생활체육·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<u>보호·육성하여야</u>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"일반이용자"란 1년 미만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를 내고 이를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.</u></p> <p><u>15. "공중보건 위기상황"이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(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등으로 국민의 생명·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.</u></p> <p>제4조(책무) <u>서울특별시</u>(이하 "<u>시장</u>"이라 한다)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문체육·생활체육·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<u>보호·육성하</u></p>

하며,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재정 지원) ① (생략)

-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<신설>

여야 하며,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해 방역 및 필요한 예방조치가 개별 체육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,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재정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- ② 시장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사업이외에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문서번호	2021080600000010
------	------------------

## 비용추계서

요청인 : 이종환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8.06	
회신일 : 직접입력	내용문의 : 02-2180-7955

###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2항에서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 
 ※제4조에서 체육시설 특성에 따라 방역 및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하나, 개별체육시설 및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제18조제2항의 감염병 확산방지 및 예방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비용

#### 나. 전제

- 지원비는 2020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비를 참고·준용하여 추계
- 민간 체육시설은 2020년 기준 11,317개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

※참고) 2020년 민간체육시설 현황

합계	신고업							자유업			
	소계	당구장	체력 단련장	체육 도장	골프 연습장	수영장	기타 시설*	소계	탁구장	볼링장	GX 시설*
11,317	10,115	3,273	2,524	2,173	1,838	125	182	1,202	324	138	740

※ 기타시설 : 종합체육시설 91, 무도학원 64, 무도장 10, 빙상장 13, 썰매장 3, 요트장 1

※ GX시설 : 줌바, 태보, 요가, 에어로빅 등

- 유흥업소 및 도박·향락·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
-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관내체육시설에 임대료, 공공요금 등 고정경비 지출을 위한 7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 폐업 시 보조금 미지급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

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제18조제2항 감염병 확산 및 방역조치에 따라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비용

### 2. 세부추계내역

- 생존자원 지원비 ≙ 15,843,800천원  
= 700,000원\*2개월\*11,317개소

※생존자원지원비는 2020년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

### [붙임1]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사업

(단위 : 백만원)

주관부서	2020년 예산	사업 내용	관련 조항
노동민생정책과 소상공인정책담당관	575,587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소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700,000원*2개월*410,400개소</li> <li>○ 운영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기간제근로 인력지원 2,496,000원*5명*25개구*2개월</li> <li>-사업 홍보 등 지원 400,000원*2개소*425개동</li> <li>-컴퓨터 등 사무기기 임차지원 500,000원*5개*25개구</li> </ul> </li> </ul>	제18조제3항

자료 :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제출 자료 및 「2020년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실행계획」 (20.5.) 제작성